特輯 技術解說

우리나라 유선방송의 실태와 국내 CATV 업계 환경 개선 방안

宋 在 克
韓國데이타通信(株) 技術委員

Ⅰ. CATV의 발전과정

케이블 TV는 TV 방송이 시작한 지 얼마 후에 등장하였다. 처음에는 산간벽지와 대도시 전파사각지대에 대한 난시청 해결용의 지역 공동수신 CATV (community antenna)시대인 제 1기였고 그후 난시청 지역이 해소 되어가면서 CATV는 재송신 서비스외에 자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영화나 지역정보를 추가로 방송하는 자주방송 CATV 시대로서 제 2기로 전환되었다. 이때 원거리 타지역의 방송을 수신 재송신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방영된 program 중 인기있는 것만 녹화편집하여 낮방송이 없는 방송 휴지시간에 재방영하는 형태가 성행하였다.

CATV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위성을 통하여 전국 네트워크에 CATV program을 동시에 배급하는 전국 규모의 CATV 시대로 접어드는 제 3기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CATV가 이 시기에 와있는데 위성을 통해 전국 대상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때문에 CATV 시스템이 대규모화 되고 CATV를 대상으로 한 전문프로그램 공급업체가 다수 출현해 제각기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입료만 내면 시청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채널당 또는 프로그램당 별도의 시청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유료 TV용 프로그램도 크게 번창하고 있다.

전기통신기술의 급진적 발달로 쌍방향 CATV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Home shopping, home banking등이 실용화될 제 4기 CATV 시대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

다음 제 5기 CATV 시대에는 데이타 뱅크와 가정용 컴퓨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Ⅱ. CATV와 전기통신의 관계

기술혁신으로 CATV도 동축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대체되고 통신위성과 컴퓨터와의 결합으로 다채널화. 쌍방향화 등 다양화 되어짐에 따라 방송과 일반 전기 통신과의 한계를 구분짓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종전에는 방송과 일반통신을 구분함에 있어 그 메시지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면 방송이고, 어느 특정인끼리의 상호관계일 경우는 통신으로 구분되고 또한 그 전달수단도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방송이 전파매체 뿐아니고 케이블 및 위성까지도 이용하여 전달되게 되므로 일반통신의 전달수단과 완전히 공용하고 있고 통신 또한 특정인끼리의 의사전달에서 다수간의 의사전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뉴테크놀로지의 급격한 발달과 인간의식의 변화는 방송과 통신의 한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고 특히 CATV의 발전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림1은 통신과 방송, 특히 CATV와의 상관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Ⅲ. 우리나라 CATV의 실태

전송기술의 급진적인 발달로 구미 선진국에서는 오늘날의 CATV가 케이블을 통해 종합 편성되는 지상방송과는 달리 전문화되고 심도있는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통신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CATV는 아직 기존 지상방송을 재송신하거나 비디오를 방영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동안 1961년 8월에 제정 공포된 유선방송 수신관리법의 시행령에 TV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TV 난시청지역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 관리 운영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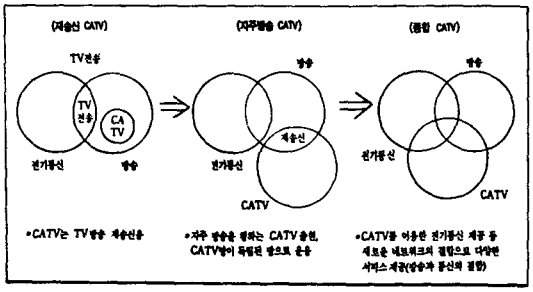

자료 : 日本우정성 編, 1986년판 통신백서

그림 1. CATV의 발전방향

그후 경제발전과 함께 라디오와 TV등의 방송매체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기존 방송의 난시청지역은 거의 해소되어 초기의 CATV의 역할도 변모되어 소수의 한정된 채널만이 방송되고 있는 기존방송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명목으로 주로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특히 낮방송 휴지시간을 활용하여 인기위주의 특정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재편집물이나 흥미위주의 비디오를 방영해주는 형태로 진전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들을 법적으로 정상적인 운영방안으로 유도하지도 못하고 합리적인 제재도 하지못하다 보니 영세한 유선방송 업자들이 급증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무허가업자들도 난립하고 있어 기존의 유선방송으로부터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방송질서를 어지럽히고 퇴폐적이거나 만용을 북돋아 사회적 정서를 해치는 상업성으로 치달은 점도 적지 않다.

이와같은 현상은 1987년에 새로이 제정 공포된「유선방송관리법」이 무질서하고 불법적인 CATV의 규제와 시설의 질적 향상에 치중된 반면 CATV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자주방송의 허용이 금지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VTR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비디오 관련시장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대부분이 외국 비디오의 불법복제물로써 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배경은 우선 국내에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프로덕션이 충분히 육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같이 비디오시장에서 합리적인 유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유통에 대한 법적 제재

표 1. 유선방송 사업체 현황

허가업체		소계	무허가업체		소계	총계	비고
중계	음악	598	중계	음악	323	921	
544	54		286	37			

• 허가 업체는 전체의 65%
• 무허가 업체는 전체의 35%
* 무허가업체 322개(35%점유)의 가입대수는 소규모적이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함(불법비디오 및 과격(모험)영화 상영으로)

표 2. 유선방송 지역별 분포 현황

(88. 12. 5—12. 27)

구분	허 가		무 허 가		비디오	중 계 비디오	계
	중계	음악	중계	음악			
서울	19	4	10	18	43	23	117
부산	55	8	1		25	1	90
인천	4	3	4		1		12
대구	7	2		6	1	4	20
광주	3	2					5
경기	72	11	28	3	17	4	135
강원	61	4	28				93
충남	30	4	13	4	3		54
충북	38	1	9	3			51
경남	89	4	12	1	1	8	115
경북	93	4	9	2	4	7	119
전남	44	3	9		10	9	75
전북	23	3	2				28
제주	6	1					7
계	544	54	125	37	105	56	921

표 3. 전국유선방송 사업체 및 가입자 현황

(89. 1. 30현재)

구 분	사업체수	가 입 대 수 (TV가입대수임)	비 고
서 울	117	275, 565	
부 산	90	302, 191	
인 천	12	203, 300	
경 기	135	555, 026	
강 원	93	100, 185	
충 남	54	94, 084	대전포함
충 북	51	96, 062	
경 남	115	261, 913	
경 북	139	253, 499	대구포함
전 남	80	100, 381	광주포함
전 북	28	35, 000	
제 주	7	2, 000	
계	921	2, 279, 706	

• 숫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표 4. 가입자(대수)별 현황

(88. 12. 31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계	비고
200 이하					5		1	2	11			19	
200 이상				2	7		1	1	6		2	19	
300 〃				2	7	2	2	2	11		1	27	
500 〃	1	4		8	13	8	4	10	12	1	5	66	
1000 〃	3	13		12	14	4	6	11	23	5	3	94	
2000 〃		13		7	5	4	1	8	11	4		53	
3000 〃	1	5		2	4	4	2	5	2	4		29	
4000 〃	1	5		3	4	3	1	1	1	1		20	
5000 〃		2		1		1		1	1			6	
6000 〃				2	1	1		1				5	
7000 〃	1		2						1			4	
8000 〃		2		2			1	1	1			7	
9000 〃		1		2								3	
10000 〃					1	1	1		1	1		5	
11000 〃				1					1			1	
12000 〃										1	1	2	
13000 〃	1											1	
15000 〃		1	1									2	
17000 〃									1			1	
19000 〃			1									1	
20000 〃													
23000 〃			1						1			2	
25000 〃				2								2	
30000 〃			1	1			1	1				4	
합 계	8	46	6	47	61	28	21	44	84	17	11	373	

표 5. 유선방송 재방송 현황

방송시간 현황

구 분	방송시간	허가자(회원)	비디오업자및비회원	비 고
1일	2시간	없음	없음	
	6시간	70%	없음	
	8시간	20%	없음	
	10시간	10%	10%	
	12시간		30%	
	24시간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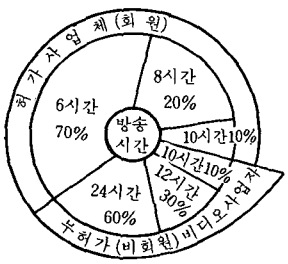

조치도 미흡한 점이 건전한 유통체계를 저해시키는 중요 요인이기도 하다.

금년에 한국유선방송협회가 제시한 전국유선방송 사업체 현황은 표 1과 같고, 지역별 분포현황은 표2와 같으며, 전국 유선방송 사업체수와 가입자 현황은 표 3과 같다.

전국 가입자 규모별 현황은 표4와 같다.

한편 전국 유선방송 업체의 재방송 사항의 통계는 표 5와 같다. 이 표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12시간 내지 24시간의 재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법에서 금지된 자체방송을 어느정도 준수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무허가 업체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현행법상 규제조항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자행한다는 의미가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종합 자주방송의 실현방안이 조속히 강구 되어야 함을 실감할 수 있다.

전국 유선방송업체가 자체방송한 내용별 점유율은 표 6과 같다.

표 6. 자체방송의 내용별 점유율

방송내용별 현황

구 분	방 송 내 용	%
허가 사업자 (회원)	• 오락프로 -쇼프로, 가족오락, 게임, 음악	30%
	• 교육프로 -인간승리, 인간시대, 금강산, 미니시리즈	28%
	• 영화(외화, 국산)	27%
	• 홍보(공지사항) -정부기관(읍, 면, 시, 도 관청) 국영기업체	없음 14%
	• 시사성	1%
	• 뉴 스	없음
무허가 및 비디오사업자 (비회원)	• 음란비디오 및 극명화	60%
	• 영화(드라마)	40%
	• 시사성 뉴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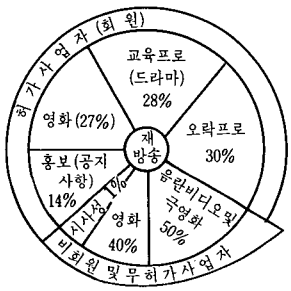

분 석

- 허가 사업자중 회원사는 법규준수
- 허가 사업자중 비회원사는 법규위반
- 무허가 및 비디오 사업자는 탈법적 영업으로 전환
- 허가업체의 시사성 방송은 대통령 선거시 전국적으로 재방송 경기지역 2-3회 반복 방영 (재야단체에서 항의 있었음)
- 비회원은 전북 1개업체 방영

※ 정부당국의 법국가적 단속책 강구

표 7. 가입자(시청자)의 성향

시청 형태

(88. 3.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유 형 별 내 용		응답(%)	비 고
유선방송 가입동기(스스로 필요해서)		72%	필요성 증대
일일 평균 5시간 이상 시청		40%	성남시가입자 설문조사결과
가입후 편리한점	수신장애 극복	43%	〃
	여가선용에 적합	53%	〃
시청년령 (30세-50세)		69%	〃
성 별 분 포	남	40%	〃
	여	63%	〃

그리고 1988년 8월에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유선방송 가입자의 성향조사 결과를 보면 표 7과 같다.

한편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써 이는 경기도를 전담하는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은연중 경기도내 행정기관들이 자체 PR을 목적으로 종합자주방송을 묵시적으로 권장한 결과로 예측되고 다음 순으로 많은 부산지역은 유선방송에서 은밀하게 일본방송을 중계하고 있지않나 하는 추측이 일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몇몇 제벌기업들도 자체내에 케이블 TV국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현대그룹이 85년 6월에 계동에 있는 신사옥에 케이블 TV국을 설치하여 매일 뉴스와 영어회화등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동일 건물내에 입주한 계열사 전체를 상대로 방영하고 있으며 ㄱ 외에도 럭키금성 한전, 포항제철 등도 이미 사내용 대규모 케이블 TV시설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 대우, 효성등도 대규모 사내 케이블 TV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Ⅳ. 국내 CATV 업계 환경 개선 방안

1. 현행 유선방송 관리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부당국에서는 무허가 업체의 난립과 불법, 저질음반이나 비디오를 단속할 강력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CATV를 그간의 난시청 해소용에서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1982년에 「유선방송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1961년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은 그동안 급진적으로 발전된 유선방송 사업의 서비스 범위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사항등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으며 사업운영에 대한 관장부처와 시설 검사 지도에 대한 관장부처가 이원화되어있어 합리적인 통제가 어렵고 따라서 난립된 무허가 시설의 규제도 제대로 되지않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현재의 공영방송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부처의 실무적 업무에 대한 이해, 조정등이 해결되지 않아 유보상태에 있던 「유선방송관리법」안이 4년이 지난 1986년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1987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유선방송관리법은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인한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기존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개선하여 첨단 매체로써의 유선방송의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당초 시안에는 유선방송 사업을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법안의 골자인 종합유선방송 허용에 대한 조항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덕션이 제대로 육

성되어 있지 않다는등 현재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그러나 유선방송이 건전하고 다양하게 발전되려면 유선방송의 핵인 종합유선방송이 허용되어야 하며 또한 종합유선방송이 건전하게 번창하려면 각기 전문성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사항들은 재정적, 법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운영주체 및 시설의 빈약성과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CATV 운영실태는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소규모일 뿐아니라, 시설과 프로그램 송출업무 등 모든 영역을 한사람(한사업자)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운영면에서의 영세성, 시설면에서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장 경쟁원리가 극도로 발달된 미국에서 CATV가 가장 먼저 발전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경제수준과 투자사이의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의 것을 도입해서 시급히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 놓인 구라파의 경우는 기본시설의 투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국가적 계획하에 시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기본 시설투자를 누가할 것인가? 그리고 역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특색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가 담당하여 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CATV의 방송범위 결정과 더불어 CATV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케이블 TV의 도입이 정부의 신중한 정책적 고려하에 구체적인 시행개선안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고 이에는 케이블TV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강조될 것이며 케이블 TV의 신설 및 신설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차원의 합작 또는 Consortium 형식의 투자방식과 운영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영세업자가 전시스템을 무리하게 독점 운영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CATV 전시스템을 그 기능별로 전문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케이블 TV가 각 지역별 방송에 적합한 방송형태이고 방송내용의 제작과 송출기능을 분리하여 운영하기에 좋은 방송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CATV 전시스템을 각 기능별로 분할하고 이를 공민영 합작 형태로 할 경우의 잇점은 케이블 TV 초기의 수신가입자와 광고주 확보가 어려운 반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막대한 경비와 시설투자비의 염출과 정부나 개인의 정보독점 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

또한 공민영 혼합방식은 공공사업형태의 장점인 경제성, 계획성, 효율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입자의 가입비와 월이용료의 부담문제

CATV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를 시청하려는 가입자가 많아야 한다.

이와같은 CATV의 보급, 확산에는 첫째, CATV로 시청하는 화면이 기존 TV보다 선명하고 음질이 좋아야한다. 즉 기술적 특성이 기존 공간파 TV보다 우수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요금이 저렴하여 가입에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입자의 부담에는 현재 무원칙적으로 과다하게 부과되는 가설비 명목의 가입비와 월정액으로 징수되는 월시청료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본격적인 종합유선방송이 실시될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중 가입자(시청자)의 의사에 의해 시청하게 되는 특정 프로그램의 시청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불하게되는 pay-per-view방식이 도입될 것이다. 이와같은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의 하나로 CATV에 광고방송의 도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과중한 시설비 명목의 가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기간전송시설(intrastructure)의 건설을 국가 또는 공공기간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는 CATV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4. 프로그램의 빈약성과 개선방안

현재의 무선에 의한 지상방송은 오락성, 소유형태의 독점화, 문화적 영역의 한계성 그리고 시청자의 선택권의 한계성 등 일반시청자의 불만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케이블 TV는 다채널의 용량을 수용하는 특성으로 이와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게된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많은 채널이 등장 할수록 프로그램은 대중영합형으로 저질화 내지 채널 낭비현상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케이블 TV의 다채널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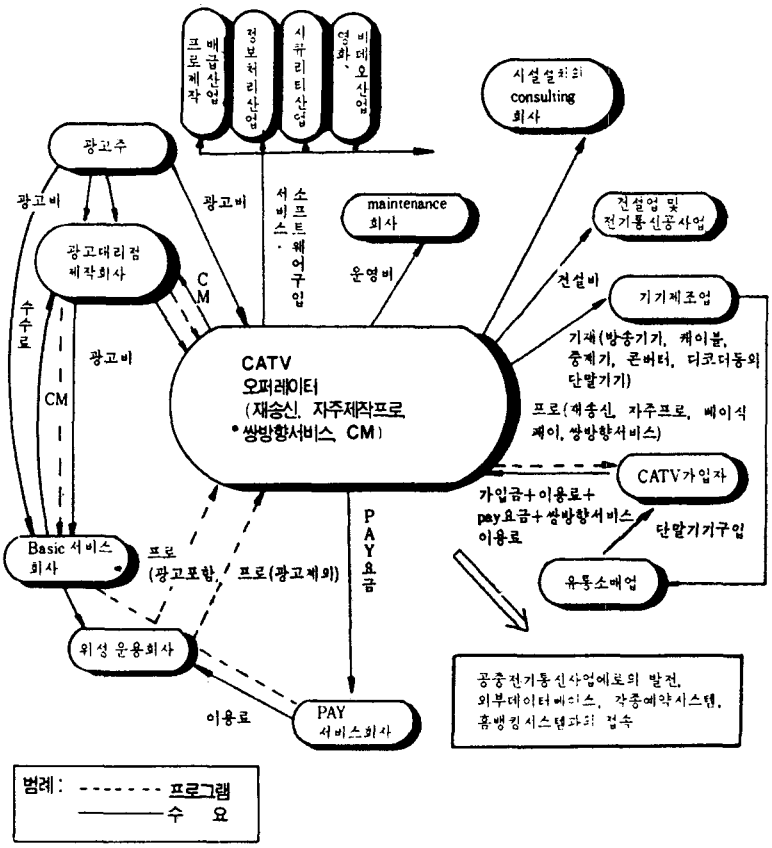

그림 2. CATV 서비스 관련 시장구조

그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외국 프로그램의 도입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이는 바로 문화적 종속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비디오 프로덕션, 영화산업등과 같은 국내의 프로그램 공급체계가 아직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형편이므로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되면 양질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 CATV에 공급되는 프로그램은 기존방송보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가입자를 계속 확보하고, 신규가입자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제작현황을 살펴보면 질은 어떻든간에 프로그램의 절대수 마저 부족한 형편이다. CA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 영화산업이 부진할 뿐 아니라 방송용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독립프로덕션 제도도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따라서 CATV 망이 더욱 확장되고 본격적인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될 경우 채널의 전문화는 이루어지겠지만 이 채널들을 채워줄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프로 합유선방송의 도입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분야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V. 결 론

CATV 사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사회생활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주거환경이 밀집화, 고층화 되어감에 따라 기존 지상방송파의 직접 수신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CATV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케이블의 건설 및 소유, 유선방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서비스하는 방송사업, 각종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프로그램 공급사업, 유선 방송사업에 필요한 제반기기를 제조 공급하는 기기제조 사업등을 분리, 전문화 시켜야 한다.

이와같이 CATV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유선방송관리법은 물론 각종 법규와 제도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화, 전문화시켜 CATV에 대한 국민의 시청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국내 CATV 업계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위에 케이블 생산업, 제조업, 시공업, 망운영업, 부품 및 장비제조업등 자연스럽게 전반적인 활성화를 갖어오게 된다.

參 考 文 獻

[1] 김규, 한국에서의 유선방송 실시와 제문제, 放送研究, 1988. 여름호
[2] 김우룡, 케이블TV原論, 가남, 1987. 9.30.
[3] 원우현, 우리나라 CATV의 現況과 展望, 한국통신학회, CATV와 영상정보통신 Forum, 1988. 12. 17
[4] 이상덕외, 특집; CATV 시대 본격진입, 월간경영과 컴퓨터, 1989. 8 월호
[5] 송재극, CATV의 역사적 발전단계와 각국의 현황,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인 연수교재, 1989. 11.
[6] 김우룡, 뉴미디어 : 케이블 TV, 월간放送文化, 한국방송협회, 1988. 2~1988. 5

筆 者 紹 介

宋 在 克
1931年 1月 1月生
1956年 서울대 공대 통신공학과 졸업
1956年 KBS 입사
1978年 KBS 기술국장, 시설국장
1981年 KBS 기술본부장
1987年 KTA 방송망 사업본부장
1989年 DACOM 기술위원
현재~ 대한전자공학회 감사, 방송제도 연구위원회 위원